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댐관리청 등이 댐 수질 개선을 위해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5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댐 국유 재산 관리와 관련된 업무위탁 사항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이관하는 한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물환경관리사업 종류 및 댐 상류 범위 신설 (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시행할 수 있는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및 댐 상류의 범위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하도록 함.

나. 댐 시설물(국유재산) 관리 업무위탁규정 이관 등 (안 제16조제3항 신설)
기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의2에 따라 댐수탁

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수행 중인 댐 국유재산 관리업무 사항을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안 제41조제4항 신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보다
만족도 높은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라. 댐수탁관리자 등의 권한 정비 등 (안 제46조 및 제48조 개정)

1)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 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중에서
댐용수(하천수) 사용허가의 경우는 관할 홍수통제소와 협의하도록 개선
하고, 무분별한 점용허가 등으로 인한 댐 수질오염 예방 등을 위해 점용
허가 등의 처분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토록 개선함.

2) 댐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환경관서
의 장에게 위임하고,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을 댐수탁 관리자
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개선하여 댐 시설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
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별표 1 및 별표 11을 각
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란 「하천법」 제23조”를 “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댐의 관리업무 중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조의2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1 제1호”를 “2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을 “2”로 한다.

제27조 중 “2에서”를 “3에서”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3”을 “4”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4에서”를 “5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5”를 “6”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6”을 “7”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확정하여야”를 “확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7”을 “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을 “9”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제46조제2항 본문 중 “한다)과 협의하여야”를 “한다)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처분 중 하천수의 사용허가는 관할 홍수 통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47조제2항 중 “9”를 “10”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변경·폐지·고시 및 통지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고시
3.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4. 법 제15조에 따른 댐관리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 중 별표 11에서 정하는 권한
5.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된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가 아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 및 하천의 점용허가 등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법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처분
5. 제4호의 처분과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③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허가(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제1호의 허가와 관련된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3. 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권한

4.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으로 한정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
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8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 중 “10”을 “12”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
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최
초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수탁관리자의 처분사항 중 하천수 사용허가 협의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천수의 사
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별표 1]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사무(제16조제3항 관련)

1.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6.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 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7.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8.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9.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0.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1.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12.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14.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15. 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16.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17.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18.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19.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20.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별표 11]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제48조제1항제4호 관련)

1.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결정
2.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3.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댐건설장기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댐건설장기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 --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6조(댐관리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6조(댐관리의 위탁) ① ----- ----- ----- ----- ----- ----- ----- ----- ----- ----- ----- 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댐의 관리업무 중 국유재산의 관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나 댐사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① ----- ----- ----- ----- ----- ----- ----- -- 협의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8조의2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한다.
제20조(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分離費用 殘餘便益支出法)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에 따라	제20조(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① ----- ----- 부담해야 ----- ----- 2 제1호----- ----- -----.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 ----- ----- ----- 2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상각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각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한다.	제27조(상각액) ----- ----- 3에서 ----- ----- ----- -----.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① ~ ③ (생 략)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④ ----- ----- ----- ----- ----- 4 ----- -----.
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가금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 ----- 5에서 ----- -----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 ----- ----- ----- ----- 6 ----- -----.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생 략)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② ----- ----- ----- ----- ----- 7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

관한 계획(이하 “<u>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u>”이라 한다)을 <u>수립하여야</u>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u>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u>”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10월 10일까지 다음 해의 <u>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u>을 수립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이를 <u>확정하여야</u> 한다. <u><신설></u> 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u>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u>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u>댐주변지역지원사업</u>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 ----- <u>수립</u> <u>해야</u>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확정</u> <u>해야</u> -----. ④ <u>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u> ⑤ ----- ----- ----- ----- ----- -----	장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u>제출하여야</u> 한다. 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①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u>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u>을 관할하는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 제46조(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댐의 관리가 위탁	----- ----- <u>제출해야</u> -----. ⑥ ----- ----- ----- <u>제5항</u>-----.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① ----- ----- ----- ----- <u>8</u>-----. ② ----- ----- ----- <u>9</u>----- ----- ----- 제46조(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① ----- -----
--	--	---	--

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미리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3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
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② -----

----- 한다)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 . 다만, 법 제45조제1
항제1호의 처분 중 하천수의 사
용허가하는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

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 ④ (생략)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변경·폐지·고시 및 통지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고시

2의2.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
야 한다.

제47조(담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
료·사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0 _____
 _____.

③·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변경·폐지·고시 및 통지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
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
항의 고시

3.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4. 법 제15조에 따른 댐관리에

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필요한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 중 별표 11에서 정하는 권한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 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 및 하 천의 점용허가 등	5.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
4.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6. 삭 제
5.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7. 삭 제
6. 법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의 처분	8. 삭 제
7. 제6호의 처분과 관련된 법 제 47조에 따른 청문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 부장관의 권한 중 법 제15조제2 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자에게 위 탁된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가 아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8.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 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 및 하 천의 점용허가 등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 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 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 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법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의 처분
	5. 제4호의 처분과 관련된 법 제

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 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허가 (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47조에 따른 청문
2. 제1호의 허가과 관련된 법 제 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 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③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 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으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 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 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허가 (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 도지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 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 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호의 허가과 관련된 법 제 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 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3. 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권한
	4.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으로 한정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 도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u>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제48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이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9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12-----.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621